

< 붙임3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합병·분할 인가 심사
관련 사업계획서 추가 제출사항

2014. 10.

방송통신위원회

I. 인가 심사 개요

1단계	임원 결격심사
-----	---------

- 인가신청 법인의 임원이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사업폐지 명령 내지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심사(본적지 관할 구·군청에 신원조회 의뢰)

2단계	인가 심사
-----	-------

- 인가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기준 및 절차 관련 내부지침'에 따라 심사

- ①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② 위치정보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 ※ 재무구조의 건전성 평가 또는 영업 및 기술부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

II. 인가 심사 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1	인가 심사 기준
---	----------

구분	심사사항	심사기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	-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 - 양수(합병)인의 재무구조의 건실성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 사업운용계획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위치정보사업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	- 당해 양수(합병)로 인한 양수(합병)인의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계약전환 비용의 과다 여부 -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익저해 여부 및 공공의 이익 증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	- 당해 양수(합병)로 인한 법 제24조의 동의철회, 중지요구, 열람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 - 요금, 서비스품질의 변경 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이익의 저해 여부 - 설비의 공동활용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위치정보산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

○ 양수 및 합병·분할 관련 요약문

다음과 같은 양수 및 합병·분할 관련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기술

- 양수(합병·분할) 개요, 목적, 일정, 양도 양수 주체
- 양수(합병·분할) 이전과 이후 조직변화 및 재무변화 비교
- 양수(합병·분할) 이전과 이후 변경된 사업 내용 비교
- 양수(합병·분할) 이전과 이후 변경된 시장점유율 비교
- 양수(합병·분할) 이전과 이후 변경된 투자 및 재무계획
- 양수(합병·분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계획 및 주요 변동사항
- 양수(합병·분할)에 따른 서비스 품질변동에 관한 사항